##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231

발의연월일: 2021. 1. 7.

발 의 자:윤관석·고용진·고영인

홍성국 • 이규민 • 김용민

박찬대 • 양기대 • 김교흥

신동근 • 허종식 • 정일영

의원(12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수급인이 선급금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하수급인에게도 지급하도록 하고, 각종 공사대금의 청구·지급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며, 하도급대금 등을 3천만원 이상 체불한 건설사업자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건설현장에서 상대적 약자인 하수급인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선급금의 범위에 건설기계 대여대금이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는 공사대금의 범위와 시스템 이용의 방법·절차 등이구체적이지 않아 건설현장에서 현행법의 적용과 관련된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하도급대금 등에 대한 체불을 근절하고 건설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습체불건설사업자에 대한 명단 공표의 기준금액 을 현행보다 낮추고, 건설사업자가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건설 사업자의 책무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아울러 건설현장 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일반화되면서, 건설사업 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지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하수급인에 대한 수급인의 선급금 지급의무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공사대금의 청구·지급과 관련된 규정들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법을 개정함으로써, 건설현장의 각종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하수급인과 건설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건설사업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제3항).
- 나.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선급금의 범위에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포함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는 공사대금의 범위를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으로 하며, 시스템이용의 방법·절차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4조제4항 및 제9항).
- 다.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의 대상을 1천만원 이상 각종 대금을 체불한 건설사업자로 확대함(안 제86조의4제1항).
- 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외국인근로자를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고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함(안 제87조의3 신설).

#### 법률 제 호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법령을"을 "법령과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등 근로관계 법령을"로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다목을 삭제한다.

제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조에서"를 "조 및 제87조의 3에서"로 한다.

제34조제4항 전단 중 "구입하거나 현장노동자를"을 "구입하고 건설기계를 대여하거나 건설근로자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공사대금"을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을 먼저 지불하고, 해당 금액을 발주자로부터 기성금 또는 준공금으로 나중에 지급받는 것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건설공사용"을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공사대금 청구·지급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83조제12호 중 "제7항에"를 "제8항에"로 한다.

제86조의4제1항 본문 중 "및"을 ",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및"으로, "3천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제8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7조의3(공공건설공사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관리) ① 공공건설공 사의 발주자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적법하게 고용하 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공공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확인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공공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4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계약

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전에 제34조제1항(제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81조 또는 제82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제4조(건설공사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의 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건설 관련 주체의 책무) ①	제7조(건설 관련 주체의 책무) ①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건설사업자는 시설물의 품	③
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건설	
공사 및 건설용역에 관한 <u>법령</u>	법령과
을 준수하고 설계도서(設計圖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
書), 시방서(示方書) 및 도급계	급하는 등 근로관계 법령을
약의 내용 등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건설	
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시공능력과	
관련된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	
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	
다.	
제13조(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제13조(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①
해당하는 자(법인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9조제1항에 따	
른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다.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해당	

국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 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 우에도 같다.

- 1. 2. (생략)
- 3.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 라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말소 당시 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 람과 대표자를 포함하다.

가. • 나. (생 략)

다. 제8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2년 6개월이 지 나지 아니한 자

라. (생략)

4. ~ 6. (생략)

②·③ (생 략)

여제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

1.•2. (현행과 같음)
3
가.・나. (현행과 같음)
<u>&lt;</u> 삭 제>

라. (현행과 같음) 4. ~ 6.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29조의3(건설공사의 하도급 참 제29조의3(건설공사의 하도급 참 여제한) ① -----

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이하 이 조 에서 "공공건설공사"라 한다)에 대한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여 야 한다. 이 경우 하도급 참여 제한 기간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 6. (생략)
- ② ~ ⑦ (생 략)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7 ~ ③ (생 략)

④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자재를 구입하거나 현장노동자를 고용하는 등 하도급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수급인이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채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 대비하

<u>조</u> 및 제87조의3에서
1. ~ 6.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구</u> 입하고 건설기계를
대여하거나 건설근로자를
,

여 하수급인에게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 ⑧ (생 략)
- ⑨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렁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 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 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 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 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후단 신설>

⑤ ~ ⑧ (현행과 같음)
9
<u>공</u> 사대금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
지급금(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
을 먼저 지불하고, 해당 금액을
발주자로부터 기성금 또는 준공
금으로 나중에 지급받는 것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u>가설기자재</u>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국 7 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면 그 건설사업자(제10호 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수급인을, 다 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 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 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 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제3호의 2, 제3호의3, 제4호부터 제8호 까지, 제8호의2,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 다.

- 1. ~ 11. (생략)
- 12. 건설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같은 조 제7항에

<u>이 경우 공사대</u>
금 청구·지급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
교통부렁으로 정한다.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b>-</b> .
1. ~ 11. (현행과 같음)
12
<u>제8항에</u>

따라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13. (생략)

제86조의4(상습체불건설사업자 저 명단 공표 등) 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 간 제34조제1항(제32조제4항에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하여 제81조 또는 제82 조에 따른 처분(불복절차가 진 행 중인 처분은 제외하며, 동일 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2회 이 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횟수를 1회로 본다)을 2 회 이상 받은 건설사업자 중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및 건설공사용 부품대금의 체 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자 (이하 "상습체불건설사업자"라 한다)의 명단을 공표하여야 한 다. 다만, 상습체불건설사업자 의 사망, 실종선고로 명단공표 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_
13. (현행과 같음)
세86조의4(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등) ①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및
<u> 1천만원</u>

② ~ ⑤ (생 략) <신 설>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87조의3(공공건설공사의 외국
  인근로자에 대한 관리) ① 공
  공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인근로
  자를 적법하게 고용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공공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확인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이에 따라야 한다.
  - ③ 공공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수 급인 및 하수급인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 및관계 기관의 장에게 알리는 등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